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보고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제36조에 따라 정관 일부 개정 사항을 보고 드림

관련근거 :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제36조

제36조(정관의 변경)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 현황

- 정관명칭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 구 성 : 총 7장 39개조 및 부칙

정관 개정사항

○ 주요 개정내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 조항 정비
 - ▶ 동법 제10조 내용(임원의 결격사유 세부조항)을 정관 제18조에 반영

근거	결격사유 추가 반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 ~ 6호,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제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하여 심의를 거쳐 해임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서 제출 현행화
 - ▶ 동 조례 제22조의2 내용을 정관 제26조에 동일하게 반영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산 완료, 이후 1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장,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점검」에 따라 연구원 조직 및 정원표를 정관에 반영
 - ▶ 연구원 직제 및 정원규정 내 조직 및 정원표와 동일하게 정관에 별표로 반영
- 이사회 의결 : 제18차 정기이사회(2022. 2 .25.)에서 원안 가결

향후 계획

- 시의회 보고 후 서울시 승인 요청
- 서울시장 승인 후 정관 효력 발생

보고 후 즉시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전문 1부. 끝.

붙임 1.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② (생략)</p>	<p>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2. <u>(삭제)</u> 3. <u>(삭제)</u> 4. <u>(삭제)</u> 5. <u>(삭제)</u>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제26조(결산) 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은 세입·세출의 결산서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 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 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 록 1부.

제28조(조직 및 정원) ① 연구원에 연 구부서, 행정부서 및 기타 필요한 기 구를 두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 규정으 로 정한다.

② (생략)

부 칙 (2021.11. .) <신 설>

<신 설>

<별표>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출 연 자	금 액(원)	비 고
계		500,000,000	
현금	서울특별시	500,000,000	설립출연

개 정 안

제26조(결산)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완료후로부터 10일 이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장,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 여 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28조(조직 및 정원) ① 연구원의 조 직은 [별표 제2호], 정원은 [별표 제 3호]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 규정 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2022. .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 장 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출 연 자	금 액(원)	비 고
계		500,000,000	
현금	서울특별시	500,000,000	설립출연

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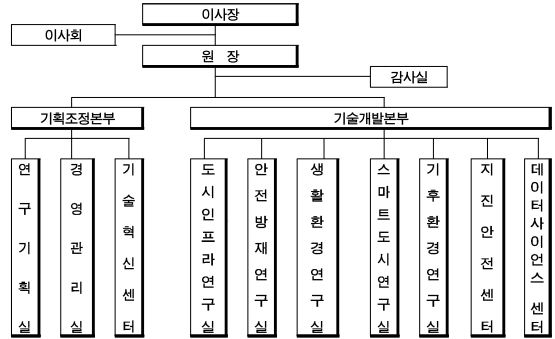
<신 설>

<신 설>

개 정 안

<별표 제2호>

기구표



<별표 제3호>

정원표

구분	계	원장	연구직					일반직					관리 운영직
			소계	선임 연구위원	연구 위원	수석 연구원	전임 연구원	소계	선임 위원급	위원급	수석급	전임급	
정원	104	1	85	5	24	29	27	19	1	5	7	6	3

붙임 2.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일부 개정 전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제정 2018.03.27.

개정 2018.06.19.

개정 2019.03.08.

개정 2019.09.06.

개정 2022.00.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Seoul Institute of Technology(약칭 SIT)로 표기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상암동, 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 둔다.

제4조(사업의 범위) 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 [2019.9.6. 개정]

1.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2.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3. 물순환 및 하천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4.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5. 스마트도시 조성·관리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6.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
7.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8. 서울특별시, 국가·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장 1명
3. 이사 10명 이하(원장 및 이사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제1항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제8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원장, 이사장, 선임직 이사·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관 [2019.3.8. 개정]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③ 감사 2명 중 1인은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19.3.8. 개정]

②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연구원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서울특별시 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연구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구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천된 임원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연구원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은 이사장에 선임될 수 없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연구원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장 직무대행 기간 동안 직무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9.6.19. 개정]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사회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구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① 연구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연구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은 시장의,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① 연구원의 원장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원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연구원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원장 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연구원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연직 감사가 연구원을 대표한다.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연구원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22... 개정]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2... 개정]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2... 개정]
 5. 삭제 [2022... 개정]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단, 제6조에 따른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인 임원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시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연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연구원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20조(재산)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금전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1조(재산의 관리) ① 원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연구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각,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등의 경비는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사업수입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23조(기금)** 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출연금
 2. 중앙정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업, 금융기관, 민간법인·단체 및 개인 등의 기부금
 4. 기금 적립금 및 이자 수익금
 5.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24조(사업연도 및 회계)** ①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의한다.
- ② 연구원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예산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계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계획과 예산)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제26조(결산)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완료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장,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9.3.8. 개정], [2022... 개정]

-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연구원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연구원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 ③ 연구원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4장 조직 및 정원

- 제28조(조직 및 정원)** ① 연구원의 조직은 [별표 제2호], 정원은 [별표 제3호]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및 정원 규정으로 정한다. [2022... 개정]
- ② 시장은 연구원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연구원에 소속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이 사 회

제29조(설치 및 구성) ①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원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제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9. 연구원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전 각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2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선출 및 해임 등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34조(회의록)**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장 연구자문위원회

- 제35조(설치 및 운영)**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 연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 제36조(정관의 변경)**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규정의 제정)** ①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제 및 정원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8조(해산)** ①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귀속한다.

- 제39조(광고방법)** 연구원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연구원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의 임기)** [삭제 2018.6.19.]

- 제3조(사업연도)** 연구원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구원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계획 등) 연구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연구원 설립 등기일부
터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조례 또는 직제 개·폐 등에 의한 적용) 제6조의 당연직 임원은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경과조치) ① 연구원의 설립 이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
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 내지 제6조와 관련하여 최초 원장 선임 시까지의 원장의 직무는 서울특별시 안전총
괄본부장이 대행한다.

③ 제8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18.03.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6.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9.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0.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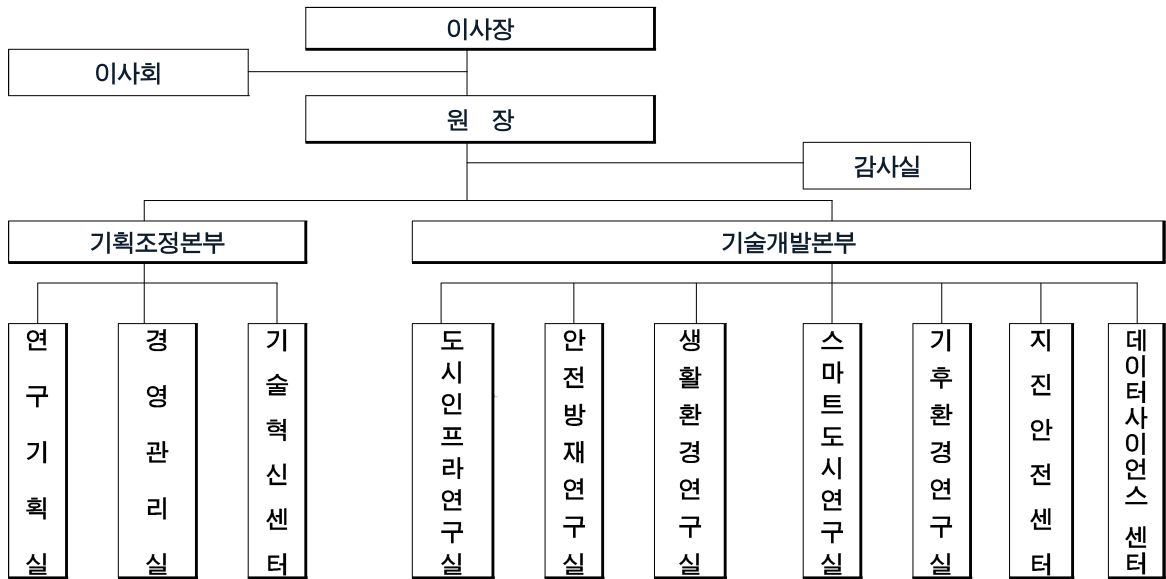
<별표 제1호> [2022... 개정]

기본재산 목록

구분	출연자	금액(원)	비고
계		500,000,000	
현금	서울특별시	500,000,000	설립출연

<별표 제2호> [2022... 신설]

기구표



<별표 제3호> [2022... 신설]

정원표

구분	계	원장	연구직					일반직					관리 운영직
			소계	선임 연구위원	연구 위원	수석 연구원	전임 연구원	소계	선임 위원급	위원급	수석급	전임급	
정원	108	1	85	5	24	29	27	19	1	5	7	6	3